

보도시점

2026. 6. 2.(화) 배포 시

배포

2026. 6. 2.(화)

국무회의 직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줄인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위한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5~’29)’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주민의 생활체감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주민들의 실생활 수요를 반영하여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과 식품 항목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과 식품사막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서비스의 공급 여부 보다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접근성’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단순히 시설·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관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도 개정하여 항목별 세부 목표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정부와 함께 개선해 나간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별표 개정 전후 비교표

담당 부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재형 (044-201-1511)
		담당자	사무관	전효주 (044-201-1518)



현행			개정안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제2조 관련)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제2조 관련)		
부문	서비스 항목	목표치	부문	서비스 항목	목표치
1. 보건의료·복지	가. 진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 여건 개선	3. 공공생활서비스	가. 진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 여건 개선
	나.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나.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다. 영유아보육·교육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다. 영유아보육·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라.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제고		사.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2. 교육·문화	가. 초·중등교육	1)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초·중등학교의 육성 2)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통학수단의 제공	라. 초·중등교육	1) 농어촌 지역 초·중등학교에 대한 접근성 제고 2)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초·중등학교의 육성 3)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통학수단의 제공	
	나.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가능성 제고	마.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	
	다. 문화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이하 “지방문화원”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2) 공연장 및 지방문화원에서 관람·이용할 수 있는 공연 및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바. 문화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영화상영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 및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별표 1 제4호가목 에 따른 문화의 집 에 대한 접근성 제고	
	라. 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아.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제1호(같은 법 제4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마.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자.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신설)		차. 생활서비스	목욕, 이용·미용 및 세탁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신설)		카. 식품	식품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현행		개정안		
3. 정주 (定住) 여건	가. 주택	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제고 2)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 한정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률 제고	가. 주택	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제고 2)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 한정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률 제고
	나.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제고	나.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제고
	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제고	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제고
	라. 난방	1)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 등을 활용한 가스 보급 확대	라. 난방	1)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엘피지(LPG) 저장탱크, 배관망 방식 등을 활용한 가스 보급 확대
	마. 대중교통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노선버스(이하 “노선버스”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 제고 2) 노선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도입 3)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의 이용 편의성 제고	마. 대중교통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노선버스(이하 “노선버스”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 제고 2) 노선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도입 3)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바.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장소·설비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라.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의 수집·수거 시설 확충
	사. 방법설비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 제고	사. 방법설비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 제고
	아. 경찰순찰	순찰 장소·시간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요청을 반영한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 실시	아. 경찰순찰	순찰 장소·시간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요청을 반영한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 실시
	자. 소방출동	화재 발생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로 정해진 목표시간 이내에 화재발생장소에 도착하는 비율 제고	자. 소방출동	화재 발생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로 정해진 목표시간 이내에 화재발생장소에 도착하는 비율 제고
4. 경제활동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 제고 2)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1. 경제활동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